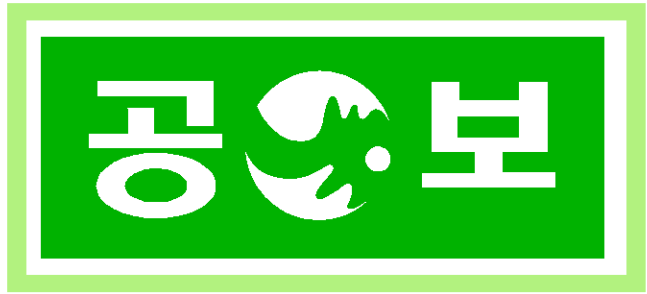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관	기 관 의 장



제 750 호 2012. 4. 16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45호[도로명주소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46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 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-312호[공시송달 공고] 5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- 4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4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우가1길 36 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4. 1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신청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시유 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당시동 126	울산광역시 북구 응가길 36 (당사동)	2004-06-09	기존 자연마을인 우가나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
2	울산광역시 북구 연일동 308-5	울산광역시 북구 연일길 32 (연광동)	2004-01-05	고려승렬원내 이 곳 부위에서 성스러운 신 언뜻의 수놓은 듯 께어나 캐연안 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일로 돌리게 됨. 현재도 부칭용명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 부여
3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, 봉촌지구 19B 8L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21길 2 (신장동)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-용하는 이름으로 동신시민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 이므로 도로명 부여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, 봉촌지구 87B 7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6-9 (진정동)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-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 46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4월 1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16길 9-6(명촌동)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울산광역시 복구 진장 명촌 108B 2-1L	명촌8길 9-6	명촌16길 9-6	2012. 4. 16	전산 착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4. 1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2 - 312호

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 및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불 고지하였으나, 주소(소재지)의 불명, 소유자·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2년 4월 1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부여(변경)하는 도로명주소

고지대상자	주민등록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“별도열람”				

※ 도로명주소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지적팀(☎ 052-219-7283,7293) 및 도로명주소검색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부여(고시)일 : 2012. 5. 7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지적팀(☎052-219-7283,72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승달 대상자

연번	고지대상자	주민등록번호	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변경사유
1	장진훈	590522-1*****	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12	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15	2004-08-09	착오부여
2	권성대	690214-1*****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6길 9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1길 9	2004-01-05	착오부여
3	설기환	480414-1*****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6길 9	울산광역시 북구 성내1길 9	2004-01-05	착오부여
4	이승명	601010-1*****	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 46-1	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 44-1	2004-01-05	착오부여
5	이영태	600315-2*****	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 46-1	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 44-1	2004-01-05	착오부여

도로명주소 부여 공시송달 대상자

인번	고지대상자	주민등록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부여사유
1	지식촌	850419-1*****	울산광역시 북구 지장면 113B 4L	울산광역시 북구 면곡 13길 10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형제 드 시. 동히 드 명칭 이므로 도로명 부여